

고용안정장려금(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)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,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방문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7. 15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



- 1. 건 명: 고용안정장려금(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)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
- 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, **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**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관리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공시송달 사유
				회수금액	처분사유	
(주)디엔아 이에너지	160-81-0 0000-0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이 하 생 략	고용안정장려금(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) 부당이득 환수 처분	933,000원	고용조정 제한기간 미준수	동 서류를 2024.6.16. 우편발송, 방문 등을 통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공시송달

- 4. 공고기간 : **2024. 7. 15 ~ 2024. 7. 29(15일간)**
- 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신부길(063-270-920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